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6.3.23. ~ 4.12.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9.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 나. 관련조문 : 조례 제5조(예산의 확보)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 및 가구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세출 증가 요인 발생

###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575,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75,000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 : 국비 460,000천원(80%), 도비 23,000천원(4%)
- 자체재원 : 92,000천원(16%)

## 3. 관련의견

- 수요조사 및 국·도비 보조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될 수 있음

## 4.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575,000
긴급복지지원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575,000
재원 조달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575,000
의존 재원	소 계	88,200	92,400	96,600	100,800	105,000	483,000
	보조금	88,200	92,400	96,600	100,800	105,000	48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800	17,600	18,400	19,200	20,000	92,000
	지방세	16,800	17,600	18,400	19,200	20,000	9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계법령 발췌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